

2022년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

2022. 7.



농림축산식품부
감사담당관실

I

감사 개요

□ 감사근거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 및 제21조(실지 감사)의 규정

* 2022년 감사업무 추진계획('22. 1. 7. 차관 결재)에 의해 실시

□ 감사목적

- 기관 운영 및 우리 부 위임·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의 내실화 및 사업추진 방법 개선 등 도모

□ 감사대상

- 국제식물검역인증원

□ 감사범위 및 내용

- 최근 3년간(2019~2021)의 기관 운영, 사업 추진,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 - 직원 채용, 징계, 복무 등 기관 운영 사항
 - 선박 아시아매미나방(AGM) 검사, 수입식물 검역 및 공항·항만 외래병해충(불개미) 조사 등 업무 전반

□ 감사기간 및 인원

- 기간 : 2022. 3. 21. ~ 4. 1.(10일)
- 인원 : 감사담당관 외 5명

II 감사결과

처분요구서 요약

1	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		
처분요구	통보, 개선	조치기관	인사총무팀

- 「인사규정」제46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안건에 관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나,
 - 2021. 11. 24. 인사위원회의 '전문계약직 직원 재계약 심의' 시 당사자인 전문계약직 2인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해당 안건을 의결하였음
- 「채용업무 시행규칙」제5조에 따라 직원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심의 시에만 예외적으로 감사 담당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으나,
 - 전문계약직 직원 재계약, 우수직원 표창 대상자 선정 등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안건에 대하여도 감사역 과장을 위원에 포함 심의하였음

국제식물검역인증원

① 인사위원회 위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부의 등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제척.기피.회피하도록 하고, 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 요구 (통보)

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한 위원요건 확대, 위원회 심의.의결 범위 조정 등 방안 마련하여 시행토록 요구 (개선)

2	징계업무처리 규정 미흡		
처분요구	개선	조치기관	인사총무팀

- 공공기관으로「국가공무원법」,「공무원 징계령」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임직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.운용하여야 하나,
 - 징계 중 '강등'은 적용 제외하고, 「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」제2조제1항에 따른 '성 관련 비위'와 '음주운전' 징계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

국제식물검역인증원

「징계업무 처리규칙」에 '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'과 '음주운전 징계기준'을 마련하고, 직원 징계사항에 '강등'을 추가토록 요구 (개선)

3	직원의 시간외근무 신청 부적정		
처분요구	기관주의, 통보	조치기관	인사총무팀

-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「위임전결규칙」에 따라 차상급 직위자에게 시간외근무 복무명령을 결재받아야 하나,
 - 최근 3년간(2019~2021) 725건의 시간외근무 복무명령은 직원 본인을 결재권자로 하여 신청하였음

농림축산식품부

직원 본인을 결재권자로 한 시간외근무 복무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“기관주의” 조치 (기관주의)

국제식물검역인증원

직원의 시간외근무 복무명령 신청이 「위임전결규칙」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로 이루어지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(통보)

4	회계규정 준수 부적정		
처분요구	통보(2)	조치기관	재무회계팀

- 내부「회계규정」에 따르면 자금의 수입·지출 등 모든 거래 시에는 원인행위 증빙서류를 갖춘 회계결의서에 따라 전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,
 - 2021년도 공항·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위탁사업 주거래 계좌 내 일반관리비를 회계결의서 없이 전표로만 작성하여 인증원 수입 관리 계좌로 이체하였음
- 위탁사업 근로자 급여, 사무실 임차비용은 위탁사업 주거래 은행인 ●●은행에서 지출하여야 하나, 검사 수수료 등 수입 관리 계좌(◎◎은행)에서 해당 위탁사업비를 주거래 계좌로 착오 송금 후 다음날 재송금함

국제식물검역인증원

① 「회계규정」에 따른 회계결의서 없이 계좌 간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(통보)

② 보유하고 있는 계좌 간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착오 송금 방지 방안 등을 강구토록 요구 (통보)

5	공항.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사업 추진 부적정		
처분요구	개선, 통보(2), 권고	조치기관	검사검역팀

- 2021. 1. 28. 농식품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한 위탁업무 범위는 붉은 불개미 등 '외래병해충(外來病害蟲)' 유입방지를 위한 분포조사이나,
 - 2021년 분포조사는 병(病)없이 해충(害蟲)에만 국한되었고, 사무처리지침, 운영지침 등 내부 사업단 업무방침에도 병(病)에 대한 조사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위탁업무 범위가 불명확함
- 위탁 계약서에는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1월말까지, 전월 실적은 10일까지 인증원장이 장관에게 각각 승인 또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
 - 내부 운영지침에는 사업 및 운영계획서는 전년도 12. 20.까지 사업단장이 장관에게 제출하고, 전월 실적은 사업단장이 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
- 매년 채용계획에 따라 위탁사업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나, 전문 인력의 지속.반복적인 채용이 필요한 점을 감안, 채용조건, 절차 등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여 채용의 공정성.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
- 2022. 1. 27. 위탁사업 계약직 직원의 전문성 강화,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(2022.1.27.)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위해 2022년도 사업단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나,
 -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단장에게 연간계획을 통보하여 교육.시행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음

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

① 민간위탁 계약서에 외래병해충의 정의를 외래병(病)과 외래해충(害蟲)으로 구분하여 위탁 업무범위를 정하되 필요한 경우 외래병에 대한 분포조사 업무도 추가토록 요구 (통보)

② 공항.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업무 운영지침 제25조는 사업단장이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민간위탁 계약서 내용과 맞도록 개정 요구 (개선)

③ 전문성과 지속.반복 채용여부 등에 따라 사업단 기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조건.임용절차 등을 '전문 계약직 직원 운영 규칙'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(개선)

④ 2022년 채용된 사업단 구성원에 대한 직무교육, 직장교육 등 교육 계획을 사업단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교육토록 요구 (통보)

6	AGM 및 재식용식물 검역 관리 부적정		
처분요구	기관주의, 개선, 통보(2)	조치기관	검사검역팀

○ 선박 아시아매미나방(AGM) 검사와 재식용식물 검역관리의 신청, 처리 여부 등을 홈페이지 누리집 시스템에 등록.관리하고 있으나,

- 최근 3년간(2019~2021) 79건에 대한 처리완료 일자가 해당 신청일 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된 채 관리되고 있으며,

- 법정 처리기간(5일)을 경과한 70건은 시스템에 연장 이력을 알 수 있는

기능이 없어 연장절차를 거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임

○「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」에서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검사의 처리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음에도,

- 이를 5일로 하여 검사를 실시, 최근 3년간(2019~2021) 91건이 운영요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(4~5일)하였음

농림축산식품부

「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」에서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검사 처리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데도 임의로 처리기간을 5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해 “기관주의” 조치 (기관주의)

국제식물검역인증원

①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로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신청과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일자와 처리일자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(통보)

② 식물방역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처리기간 연장 및 사유 등 이력이 기록되어 관리되도록 전산 시스템 기능을 보완토록 요구 (개선)

③ 「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」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 재식용식물 검역장소를 검사하도록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하는 등 해당 운영 요령을 준수하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(통보)

7	AGM 선박검사 검사인력 배정 및 검사원 서명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검사검역팀

- 「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AGM 검사 규정」에 따라 AGM 선박검사를 수행할 경우 선임검사원 등 검사인력을 적정하게 배정(조편성)하여야 하나,
 - 식물검사원 자격을 소지한 정규직 직원이 있는데도 기간제 직원만으로 배정(407건, 11.5%)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.체계적인 대처가 어려움
-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이 합동으로 검사(787건)하는 경우에도 'AGM 무감염 증명서'에 식물검사원 서명을 기간제 직원(75건, 9.5%)이 함에 따라 향후 증명서 발급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소지가 있음

국제식물검역인증원

AGM 선박검사시에는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의 합동검사가 되도록 배정하고, 검사 후 'AGM 무감염증명서'에 식물검사원 서명은 정규직 직원이 하는 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토록 요구 (통보)

8	AGM 무감염증명서 관리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검사검역팀

- AGM 선박검사 수수료가 고가(高價)이므로 무감염증명서의 무단 발급 방지 등 증명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,
 - 증명서 작성과정에서 오타, 검사일 변경 등 발생 시 사무소별 자체 폐기 함에 따라 용지의 임의 반출로 인한 증명서 부정 발급 개연성이 상존함

- 용지를 구입하는 경우 업체와 전속계약, AGM 무감염증명서 발급 이력관리 시스템 마련, 증명서 용지사용 대장 구비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

국제식물검역인증원

용지 공급업체와 전속계약, 홈페이지에 'AGM 무감염증명서 발급 이력관리 시스템' 마련, 사무소별 증명서 용지사용 대장 구비 등 AGM 무감염 증명서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(통보)

9	AGM 선박검사 수수료 관리 및 미납 업체 조치 미흡		
처분요구	통보(2)	관계기관	검사검역팀

- 「선박검사 수수료 징수업무규정」에 AGM 선박검사 수수료를 후납으로 징수 시 입금계좌를 1개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,
 - 신청인이 다수 신청 건의 수수료를 일괄 납부(644건, 16.9%) 하는 경우에는 입금내역을 확인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
- 수수료 미납 업체에게는 기일 내 미납부 시 납부방식을 후납에서 선납으로 전환하고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하고도 12개 미납 업체, 57건에 대해 수수료 선납 변경, 가산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

국제식물검역인증원

① AGM 선박검사 수수료를 후납으로 징구할 경우 신청 건별로 가상계좌를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수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요구 (통보)

② AGM 선박검사 수수료 미납 업체에 대한 조치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「선박검사수수료 징수업무규정」에 반영하는 등 미납 수수료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(통보)

10	수입 재식용 식물 검역장소 약정관리 미흡		
처분요구	개선, 통보	관계기관	검사검역팀

○「식물방역법」에 종자 묘목 등을 국내 수입하는 자는 지정 검역장소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을 정하여 인증원과 '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약정'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,

- 관리약정의 신청·변경 절차와 필요서류 등 세부내용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,
- 관리약정을 체결한 총 139개소 지정 검역장소 중 30개소가 폐업하거나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함

국제식물검역인증원

① 수입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약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약정계약 체결 및 변경, 해지 절차, 관련 양식 등을 「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세부운영 규정」에 마련토록 요구 (개선)

② 관리약정을 체결한 수입 재식용 식물 검역장소의 폐업, 주요내용 변경 등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(통보)

11	식물검역관리인 지정 및 교육훈련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검사검역팀

○ 내부 운영요령, 재식용식물규정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식물검역 관리인으로 지정하고, 수입 재식용식물 컨테이너 내외부 병해충 비산 방지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,

- 규정에서 정한 자격자를 식물검역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, 전문기간제 직원에 대하여 규정된 교육시간보다 적게 하거나 교육과정에 식물병해충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교육훈련을 미흡하게 하고 있음

국제식물검역인증원

「재식용식물 검역장소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」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식물검역관리인으로 지정하고, 규정된 내용과 시간을 준수하여 식물검역관리인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요구 (통보)